

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며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선수금, 기채, 전입금, 업체부담금에서 보조금
용자금, 선수금, 기채전입금, 업체부담금, 분양용지매각대금, 부지임대료
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확대 (안 제2조)
- 나. “농공지구“를 “농공단지“로 수정 (조례명, 안 제1조, 제3조)
- 다. “운용“을 “준용“으로 수정 (안 제5조)
- 라.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 (안 제3조,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불임
- 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1. 9. 22. ~ 10. 13. (21일간), 제출 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농공지구”를 각각 “농공단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선수금, 기채, 전입금, 업체부담금”을 “보조금, 용자금, 선수금, 기채, 업체부담금, 분양용지 매각대금, 부지임대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구시공비”를 “단지시공비”로, “기타 농공지구사업”을 “그 밖에 농공단지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사업기간중”을 “사업기간 중”으로, “일반회계에서부터”를 “일반회계로 부터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준용)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<u>농공지구 조성사업</u>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<u>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</u>(이하“특별회계 ”라 한다)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세입) 이 특별회계 세입은 <u>선수금, 기채, 전입금, 업체부담금</u>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토지매입비, 보상비, 지구시공비, 부대시설비, 기채상환금, 공동시설 유지 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</u>로 한다.</p> <p>제4조(예산운영) 이 특별회계는 <u>사업기간중</u>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일반회계에서부터</u> 임시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운용) (생략)</p>	<p><u>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농공단지</u> ----- ----- ----- <u>농공단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세입) ----- <u>보조금, 용자금, 선수금, 기채, 업체부담금, 분양용지 매각대금, 부지임대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</u>-----.</p> <p>제3조(세출) ----- ----- <u>단지시공비</u>----- ----- <u>그 밖에 농공단지사업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예산운영) ----- <u>사업기간 중</u> ----- ----- <u>일반회계로 부터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준용) (현행과 같음)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- 방림농공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분양 시작 시 분양용지 매각대금과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발생
- 평창농공단지와 방림농공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유지관리 등의 비용 발생

나. 관련조문

- 제2조(세입)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, 용자금, 선수금, 기채, 업체부담금, 분양용지 매각대금, 부지임대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- 제3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, 보상비, 단지시공비, 부대 시설비, 기채상환금, 공동시설 유지 보수비 기타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입발생 금액은 방림농공단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100% 분양되었을 경우 수입금액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금으로 산정
- 세출발생금액은 방림농공단지조성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유지관리비용과 정상화된 후 관리동 공과금등 공동시설 관리비용으로 산정

나. 추계 결과

- 추계전제에 따라 분양가격은 m²당 87,000원이며 총 분양면적은 41,009m²로 100% 분양 시 3,567,783,000원의 수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국비보조금 3,667,000,000원의 수입 발생

- 세출비용 중 단지내 관리동설치비와 단지마무리 시공비로 650,000,000원 발생
- 방림농공단지 정상화전까지의 공동처리시설 운영비와 공동시설 관리비용등으로 198,000,000원의 비용 발생
 - 2012년은 48,000,000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0,000,000원의 비용 발생

다. 재원조달방안

-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총인처리시설 설치비 3,667,000,000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조달
- 단지내 관리동 설치비 및 단지마무리공사비, 공동처리시설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자체수입인 분양용지 매각대금으로 조달

3. 작성자

작성자	관광경제과 투자유치 김은규
연락처	(033) 330 - 2741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1년)	2차년도 (2012년)	3차년도 (2013년)	4차년도 (2014년)	5차년도 (2015년)	계
세 입		534,155	3,974,395	403,158	1,306,131	1,016,944	7,234,783
○ 분양용지 매각대금		84,155	757,395	403,158	1,306,131	1,016,944	3,567,783
○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		450,000	3,217,000	-	-	-	3,667,000
세 출		450,000	3,915,000	50,000	50,000	50,000	4,515,000
○ 폐수종말처리시설기 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		300,000					300,000
○ 폐수총인처리시설		150,000					150,000
○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			3,217,000				3,217,000
○ 방림농공단지관리실 설치 및 마무리공사			650,000				650,000
○ 공동시설 운영비 등			48,000	50,000	50,000	50,000	198,000
재원 조달		534,155	3,974,395	403,158	1,306,131	1,016,944	7,234,783
의존 재원	소 계	450,000	3,217,000				3,667,000
	보조금	450,000	3,217,000				3,667,000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84,155	757,395	403,158	1,306,131	1,016,944	3,567,783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84,155	757,395	403,158	1,306,131	1,016,944	3,567,783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및 지침

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산업단지”란 공장, 지식산업 관련 시설, 문화산업 관련 시설, 정보통신 산업 관련 시설,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, 자원비축시설,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·연구·업무·지원·정보처리·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·문화·환경·공원녹지·의료·관광·체육·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·개발되는 일단(一團)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국가산업단지 : 국가기간산업,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나. 일반산업단지 :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다. 도시첨단산업단지 : 지식산업·문화산업·정보통신산업,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라. 농공단지(農工團地)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·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

【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】

제13조(단지조성비의 지원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**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**하여야 한다.